

朝鮮後期 慶尙監司考 ◀中▶

— 특히 大邱留營에서 甲午更張까지의 在任監司를 中心으로 —

張仁鎮
啓明大學校 圖書館

目 次

- I. 緒論
 - 1. 研究目的
 - 2. 研究方法
- II. 朝鮮王政下 慶尙監司의 位置
 - 1. 監司制度의 沿革
 - 2. 監司의 機能
 - 3. 慶尙監司의 擇差
 - (1) 除授
 - (2) 謝恩과 辞朝
 - ① 謝恩
 - ② 辞朝
 - (3) 到任
 - (4) 任命年齢
 - (5) 任期
 - 4. 慶尙監司의 前歷
 - (1) 主要歷官
 - (2) 除授當時의 官職
- III. 監司의 行政實態 및 文化事業
 - 1. 一般行政
 - 2. 賑政
 - 3. 教育
 - 4. 出版文化
 - 5. 遷官 및 遷去
- IV. 慶尙監司 退任 후의 進路
 - 1. 顯職 및 榮譽之典
 - 2. 最高官職
 - 3. 著作活動
 - 4. 謚號
- V. 結語

III. 監司의 行政實態 및 文化事業

慶尙監司의 職名을 細分해 볼 때 觀察使라는 原職名의 외에도 兵馬節度使, 水軍節度使, 巡察使, 大丘都護府使 등의 職을 兼職하였다 함을 위에서도 論及한바 있듯이 慶尙監司가 管掌하는 職務는 크게 行政, 刑政, 軍政 등 三權으로 區分할 수가 있다. 이 가운데 行政權에 있어서는 그 分野가 매우 廣範하였으니 즉 一般行政 財政 農工商 風俗 教育文化 등으로 細分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監司의 職務 가운데에서 특히 慶尙監司와 本道 文化發展에 따른 行政業務와 教育 文化事業에 국한하여 論하기로 하고 監司의 刑政이나 軍政權은 論外로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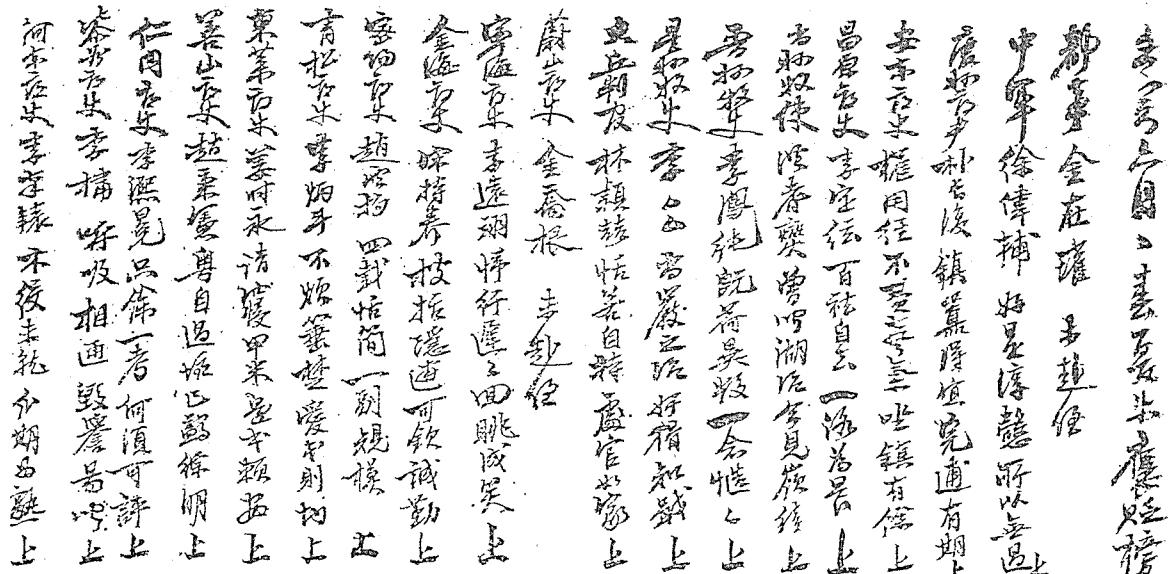
1. 一般行政

監司는 一道를 專制하는 官職으로서 國家의 重要事은 中央의 命令에 따라야 하지만 監司가 專制할 수 있는 行政權은 그 範圍가 매우 龐大하므로 職責을 背景으로 該道 官民에게 莫大한 權力を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慶尙道 管下 行政組織을 살펴볼 때 朝鮮後期의 경우 慶尙道는 <表 7>과 같이 71개 고을로 分割되어 있었는데 각 고을의 行政事務는 該邑의 守令이 統轄하였던 것이다. 本道의 馬政에 있어서도 慶尙道內에는 幽谷道 安奇道 長水道 省峴道 등을 포함한 11個所의 驛이 있고, 각 驛에는 察訪(從6品)이 所屬驛의 馬政을

<表 7> 慶尙道 行政區域 및 守令現況

區分	品階	人員	行政區域 및 守令
府尹	從2	1	慶州
大都護府使	正3	2	安東, 昌原
牧使	正3	3	尙州, 晉州, 星州
都護府使	從3	14	(大丘) 金海, 寧海, 密陽, 善山, 青松, 蔚山, 東萊, 巨濟, 居昌, 河東, 仁同, 順興, 漆谷, 咸陽
郡守	從4	12	陝川, 草溪, 清道, 永川, 醴泉, 榮州, 興海, 梁山, 咸安, 金山, 豊基, 昆陽
判官	從5	1	大丘
懸令	從5	5	盈德, 慶山, 固城, 義城, 南海
懸監	從6	33	開寧, 三嘉, 宜寧, 河陽, 龍宮, 奉化, 清河, 彥陽, 漆原, 鎮海, 真寶, 開慶, 咸昌, 知禮, 安義, 高靈, 玄風, 山清, 丹城, 軍威, 比安, 義興, 新寧, 禮安, 延日, 長鬱, 靈山, 昌寧, 泗川, 機張, 韓川, 慈仁, 英陽
計		71	大丘都護府使는 慶尙監司外 兼任

資料：大典通編



第2圖 慶宗 8年(1842) 당시 李景在 監司가 行한, 慶尙道所屬 全官員에 대한 褒貶榜의 일부

統轄하였으며, 또한 各邑마다 設置된 地方 鄉校의 教官으로서는 邑의 大小에 따라 教授(從6品)나 訓導(從9品)가 있어 이들이 教育을 擔當하였다.

一道의 事務는 監營에서 管掌하였는데, 특히 監營의 所屬官員으로서는 監司를 비롯하여 文官으로서 道內 地方官員의 非行糾察 一道의 風俗 科試 등을 管掌하고 監司를 補佐하는 職責인 都事(從5品) 1人과 武官으로서 監司의 命을 받아 道內 軍務를 管掌하는 中軍(正3品) 1人, 그리고 典醫監이나 惠民署 醫官으로서의 禮曹의 試驗에 入格한 者로서 任命하는 審藥(從9品) 1人, 刑曹의 律官으로서 禮曹의 試驗에 入格한 者로서 任命하여 法律事務를 管掌하는 檢律(從9品) 1人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中央에서 任命하였던 것이다.

監營의 事務分掌을 살펴보면 吏房, 戶房, 禮房, 兵房, 刑房, 工房 등 6房을 두어 事務를 分掌하였는데
특히 朝鮮時代의 一道事務는 매우 煩雜하고 龐大하였으므로 中央에서 任命된 品官으로서는 一道의 事務를
堪當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6房의 事務는 鄉土出身으로서 中人身分層의 衙前인 營吏가 擔當하였으며 營吏 아래에는 人吏, 各色, 知印 등이 있어 六房事務를 補佐하였다. 한편 監司의 幕僚로서는 補將이 있으며 一道 補將의 數는 大體로 8名으로 이 가운데 6名은 營吏보다. 一段階 높은 位置에서 각각 6房事務를 監督하였고 2名은 監司의 前陪(秘書)之任에 從事하였는데 이를 補將은 대개 監司가 赴任할 때 帶同한 者로서 身分은 中人層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慶尙道內 71邑 守令의 職名을 살펴보면 府尹
(從2品) 大都護府使(正3品) 牧使(正3品) 都護府使(從3

品) 郡守(從4品) 縣令(從5品) 縣監(從6品) 判官(從5品) 으로서, 각邑의 大小에 따라 品階가 높거나 낮기도 하였다. 이를 守令은 品階上 隔差가 크다하여 守令相互間에 上下의 從屬關係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모두가 監司로부터 並列의으로 指揮 監督를 받았던 것이다. 守令은 民과 가장 가까운 位置에 있다 해서 近民之官이라 하였으나 守令이 行하는 政治의 잘·잘못은 바로 該邑民을 위시하여 一道 내지 一國에 絶對的 影響을 미치게 되므로 監司는 管下 守令에 대해 徹底한 關心을 가져야 했다. 그런 관계로 監司는 守令들의 重要職務인 七事⁸²⁾를 考課하여 每年 年末마다 啓聞함은 물론⁸³⁾ 각 邑을 巡廻하면서 守令이 職務를 慵慢히 하거나 不正한 事實이 摘發되면 바로 朝廷에 狀啓하여 罷職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監司는 監營의 都事, 中軍, 審藥, 檢律과 71邑의 守令, 각驛의 察訪 등 所屬 全官員에 대해서 每年 6月 15일과 12月 15일, 2次에 걸쳐 勤務成績을 作成, 朝廷에 報告하여 都目政事 때 成績이 優秀한 者는 褒賞 내지 陞進키 하고 成績이 나쁜 者는 改差키 하는 權限을 가졌으나 이를 監司의 褒貶權이라 한다. 이와같이 監司의 褒貶權은 朝鮮末期로 오면서 漸次 紊亂했다고 볼 수 있으니, 즉 憲宗 8年(1842) 6月에 李景在이 監司가 行한 〈慶尙道褒貶榜〉⁸⁴⁾을 살펴볼 때當時 71邑의 守令 가운데 未赴任者 3人, 日淺對象者 3人 등 6人을 제외한 65人의 勤務成績에 있어

82) 守令이 遂行하여야 할 七事는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管, 疫猾息 등 7개事項을 말한다.

83) 註13同書，吏典，p. 180.

84) 大邱市 南區 大明洞 居住 崔裕承氏 所藏資料.

서는 上으로 評定된 者가 63人으로서 全體 評價對象者의 約 97%에 이르고 있고, 中으로 評定된 守令도 1人으로서 義興縣監인 李龜遠 뿐이라는 事實을 알 수 있어 對象地方守令에 대해 一定比率의 上·中·下成績配點이 事實上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一定比率의 成績配點이 없는 評定方法은 차컷하면 地緣, 血緣, 金錢授受 등 不正을 誘發케 하는 缺點을 지니고 있으므로當時 制度上의 問題點이라 指摘할 수 있는 것이다.

監司의 職務遂行에 있어 重要事라 할 수 있는 것은 農蠶을 일으켜 地方民의 生業을 保障케 하고 이들에 대한 疾苦나 弊害를 덜어주는 등 民政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물론 民과 가장 가까운 位置에는 守令이 있으나 이를 守令이 職務를怠慢히 하거나 官을 頗藉하여 民弊를 끼치는 例가 많았던 것이다.

康熙壬辰年(1712)에 承傳한 內容으로서 「增補典錄通考」를 보면

「各道方伯之任觀察風俗民間疾苦是爲緊務申飭諸道使之着實巡歷」⁸⁵⁾

이라 하여 各道 方伯(監司)의 任務는 風俗과 民間의 疾苦를 觀察하는 것이 緊務이므로 各道에 申飭하여 監司가 着實히 巡察토록 指示한 事實로 미루어 地方官인 守令이 善政보다는 惡政에 치우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地方의 政治는 실로 重한 것이다. 守令이 政治를 잘못하여 民으로부터 怨聲을 낳게 한다면, 當該守令은 물론이요 監司도 守令을 잘못 申飭했다 하여 連帶의 으로 彙劾을 받게 되므로 監司는 民에 대해 많은 關心을 가졌던 것이 事實이다.

또한 監司는 道內의 才行있는 人才를 찾아 朝廷에 薦舉하는 人才薦舉權도 갖고 있었다. 이와같이 人才를 薦舉하는 目的은 長期의 으로 볼 때 一道의 文風振興이나 學問獎勵에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 薦舉人員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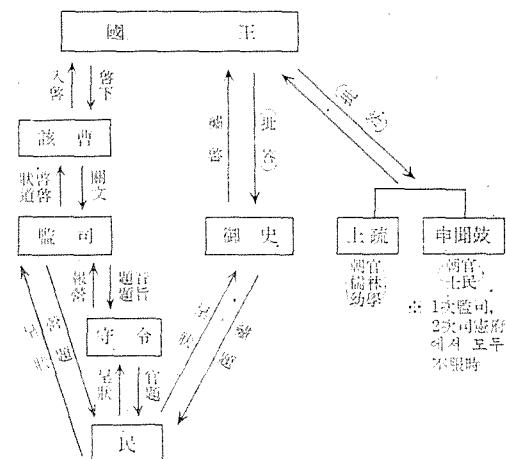
「鄉薦下三道無過三人上五道無過二人…道內前銜及生進幼學中才行表著者每式年歲抄選而各其名下懸錄其才行」⁸⁶⁾

라 하여 每式年 慶尚道의 경우는 3人을 薦舉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舊韓末에 이르러서는 慶尚監司에 의해 朝廷에 人才를 薦舉했던 道薦의 人員數가 크게 늘어나 光武 9年(1905) 3月 15일의 경우는 朴奎東, 蔡武植, 申龍均 등 18人이었고, 光武 10年(1906) 2月의

경우는 李榮基, 呂徹淵, 張智煥 등 27人이나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⁸⁷⁾

監司에 대한 地方民의 請願事項을 살펴 본다면, 一 次로 地方民의 請願件이 該邑 守令으로부터 却下되거나, 아니면 監司에게 직접 請願할 內容이거나 道政에 대한 建議事項, 또는 기타 억울한 事實 등이 發生했을 때는 本人 또는 聽名한 書面으로 監司에게 請願을 하였는데 이를 大體로 呈狀이라 하였다. 道民의 請願事項을 살펴보면, 朝鮮時代에는 儒教를 國是로 삼았으므로 대개가 忠·孝·烈 등 三綱에 模範이 되는 者 및 儒學·節臣 表著者에 대한 贈職, 旌閭, 諡號, 文廟從享의 要求 또는 儒學이나 學行 있는 者의 祀賢을 目的으로 하는 祠·書院의 設立 許可 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請願은 위 對象者の 後孫이나 門人·後學 등이 主動되어 恩典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戶籍의 匡正, 先山冒占, 租稅減免 등의 請願도相當數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請願書가 接受되면 監司는 이를 審查하여 必要時는 監營의 都事나 管下 守令 가운데서 指名한 差使를 보내어 覆審한 후에 決定키도 하였는데 여기서 民의 請願이든 守令의 報告이든 管内 内容面에서 特別한 重要事이면 朝廷에 状啓하고 一般事이면 营題라 하여 그 決定事項을 적어 請願한 當事者에게 題送하였던 것이다. <表 8>을 보면 民이 請願할 수 있는

<表 8> 請願事項 系統圖



* 系統에 따른 請願書의 名稱은 大體로 文集類에 나타난 請願史料에서 취하였으므로 文書에 따라 名稱이 다를 수도 있다.

85) 誌13同書, 吏典, p. 215.

86) 上揭書, 吏典, p. 17.

87) 樂育齋錄(大邱: 樂育齋, 壬寅~丙午(1902~1906), 筆寫本, 1冊.

결은 3가지로서 즉 守令, 監司, 御史에게 각각 請願할 수 있는 것이다. 民이 監司에게 請願하여 却下될 시는 2차로 司憲府에 請願할 수 있는데 司憲府에서도 다시 却下될 시는 3차로 申聞鼓(登聞鼓)로서 請願할 수가 있었다. 한편 請願에 따른 書狀의 名稱도 각 官衙別 또는 段階별로 달랐다 하겠으니 즉 民이 守令이나 監司 御史 등에게 올리는 것은 <呈狀>이라고 稱하지만 請願 書에 대한 長의 決定 内容을 記錄한 <題辭>를 내릴 때에는 守令은 <官題>라 하고 監司의 경우는 <營題>, 御史의 경우는 <繡題>라 하였다. 또한 守令이 監司에게 올리는 글은 <報狀> 또는 <報營>, 監司가 該曹에 올리는 것은 <道啓> 또는 <狀啓>라 하였으며 다시 該曹에서 王에게 올리는 것은 <入啓>라 하고 王이 決定事項을 該曹에 내리는 것을 <啓下>, 該曹에서 監司에 내리는 것을 <關文>이라 稱하였다. 請願事項이 朝廷을 통하여 밟아들여지게 되면 <完文>의 發給이나 贈職, 給復, 旌閭, 賜謚 등 恩典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監司가 職務를 行함에 있어서 重要事を 제외한 一般事은 規定의 範圍內에서 職權處理할 수 있지만 規定을 벗어나서 職權을 濫用하거나 職務를 慢怠하여 道政을 바로 途行치 못할 때는 朝廷의 有關官衙로부터 彙劾이나 所屬官員으로부터 率制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地方民과 監司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監司는 地方民의 非行을 御史에게 呈狀 내지 朝廷에 上疏함으로써 彙劾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彙劾으로 嫌疑가 들어나면 當該監司는 改差, 龍職, 定配 등 罪科의 輕重에 따라 執行하였으므로, 監司의 職務는 中央의 有關官衙로부터 地方民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職務의 牽制를 받았다 하겠다. 이와같은 監司職 牽制의 窮極目的은 監司가 該道의 民에 대한 올바른 政治를 行할 것을 朝鮮王政이 要求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官

衙別로 監司의 牽制系統을 圖表로서 說明한다면 <表 9>와 같다 하겠다.

또한 朝鮮王朝에서는 國初에서부터 中央官署나 監營, 地方列邑의 官衙, 또는 品官에게 日日 일어난 消息을 알려주는 奇別制度가 活潑하였다. 朝廷의 奇別事務를 國初에는 藝文春秋館의 史官이 擔當하다가는 그 후 承政院에 移管되었는데 즉 承政院에서 處理한 일을 每日 아침 奇別書吏가 奇別紙를 作成하여 中央과 地方에 頒布하였던 것이다. 다시 監營과 諸邑의 連絡事務는 各邑의 衙前出身으로서 監營에 派遣된 营邸吏가 管掌하였는데 이들 营邸吏는 監營에서 일어난 각종 事件과 監營에서 審集한 地方消息을 筆寫하여 各邑에 奇別紙였으니 이를 「營奇」라고 稱하였다. 营奇는 監營의 政事와 地方消息을 迅速히 傳達해주는 일종의 地方新聞이란 점과 아울러 監司의 政治行政 등 각 分野 職務의 公信을 높히기 위해 發行했을 可能성이 크다 하겠다.

2. 賑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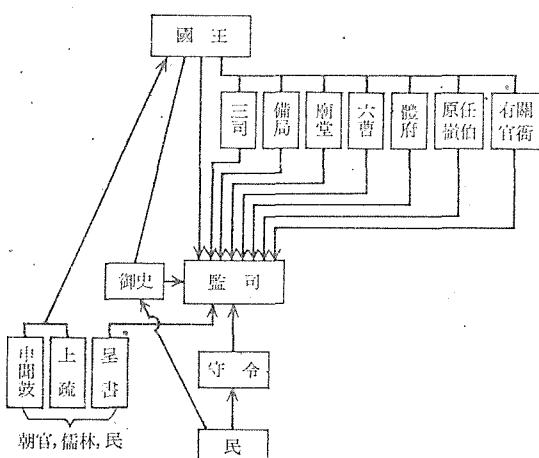
一道의 賑政을 違行함에 있어서는 財政의 힘이 크게 作用되므로, 먼저 財政에 대해 살펴볼 때 朝鮮王朝의 國家財政은 農桑이 主가 되므로 地方民은 田地를 對象으로 하는 賦稅와 사람의 勞動力와 物納을 對象으로 하는 徵役과 戶를 對象으로 土產物을 賦課하였던 貢物 등租·庸·調를 각기 規定에 依據 負擔하였던 것이다. 鄭道傳의 「三峯集」에 의하면 賦는 軍國需要의 總稱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賦의 細目을 살펴보면

「…州郡曰版籍賦之出也曰經理賦之制也曰農桑賦之本也曰賦稅賦之貢也曰漕運賦之輸也曰鹽鐵山場水梁曰工商船稅賦之助也曰上供曰國用曰祿俸曰軍資曰義昌曰惠民典藥局賦之用也曰蠲免賦之寬也」⁶⁸⁾

와 같이 州郡과 戶籍은 賦의 所出이고 經理는 賦의 統制, 農桑은 賦의 根本이며, 賦稅는 賦의 獻納이며, 漕運은 賦의 諭送이라 하였고, 鹽鐵山場水梁은 工商船稅賦의 助也이고, 上供은 國用의 祿俸, 軍資은 義昌惠民典藥局은 賦의 所用이며, 豉免은 賦의 緩和라 하였으니 賦의 所出임을 안다면 民生을 厚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州郡을 바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고, 戶籍을 詳細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地方民의 田地를 對象으로 하는 收稅의 경우를 살펴보면 田稅는 課稅 對象地에서 生產되는 現物의 徵收를 原則으로 하는 바 水田에는 米를, 耕田에는 太(黃豆)를 課徵하였는데 특히

<表 9> 朝鮮時代 監司權 牽制機構表



68) 註14同書, 卷13 朝鮮經國典·上, 賦典 條.

「凡田守令每歲九月望前審定年分等第邑內及四面各分等第 檢察使更審啓聞議政府六曹同議更啓收稅」⁸⁹⁾

라 하여 守令은 田地에 따라 그 等級을 定하여 監司에게 報告하면 監司는 再審查하여 啓聞하고 다시 議政府와 六曹가 同議하여 王에게 入啓하여 戴可를 받아 收稅하였다던 것이다. 한편 「仁祖實錄」을 보면

「戶曹錄啓乙亥量田後三南田結五十一萬四千九百二十六結而一結所出西糧米一斗五升總數五萬一千四百九十七石」⁹⁰⁾

이라 하여 戸曹에서 錄啓하기를 乙亥(1635)年 量田後의當時 慶尙·忠淸·全羅 三道의 田結數는 514,926結인데 여기서 1結當 所出은 西糧米 1斗5升으로서 總數는 51,497石이란 事實을 알 수 있다. 民이 負擔하는 田稅는 大體로 秋季에 實稔의 程度에 따라 等級을 定하여 收稅하는데 이를 田分九等法이라 하였으며 慶尙道를 포함한 三南이 이 法을 適用하였던 것이다.⁹¹⁾ 그러나 農民이 疾病이나 각종 災害 등으로 耕作에 事故가 있을 때 當該 農民은 勸農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 때 勸農官은 이를 調査하여 守令에게 報告하였다. 守令은 이를 再調查하여 監司에게 報告하여 監司가 耕作實態에 따라 稅를 輕減 내지 免除하였던 것이다.

朝鮮時代 慶尙道는 歷代를 통하여 볼 때 旱害가 他道에 비하여 尤甚하였다. 旱害가 持續될 때 監司는 이 事實을 朝廷에 状啓하고 救荒策을 講究해야 하며 예로는 他道 監司에게 救援을 要請하기도 하였다. 특히 災害가 發生하게 되면 바로 傳染病이나 瘡兒, 牛疫, 惡虎橫行, 骨肉之變 등의 事態가 繽出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事後對策도 講究되어 져야만 했다. 賑政을 管掌하는 機關을 살펴보면, 中央에는 備邊司, 賑恤廳, 惠民署, 提摶司 등이 있고, 각邑에서는 監營의 賑恤庫에 賑財를 備蓄하여 救荒에 臨하였다던 것이다.⁹²⁾ 하지만 旱害가 持續될 때에는 實제로 民에까지 惠澤을 주는 事例가 적고, 朝廷의 賑救方法도 脜縫策에 그치는 것이 大部分이었지만 事後의 그 責任은 守令이나 監司에게 둘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各道의 救荒策은 朝廷의 重大事이므로 監司가 職權으로 收拾할 수 있는 行政·財政의 頼이 事實上 弱하므로 監司는 朝廷에 状啓를 올려 이에 대한 朝廷의 命令에 따라 行하는 것이 大部分이라 할 수 있다.

慶尙道의 境遇 旱害가 가장 오래 持續되고 被害狀況도 尤甚하였던 年代를 들어 보자면 顯宗朝~肅宗初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閔善重 監司가 在任하였던 顯宗 10年(1669) 6月~ 顯宗 12年(1671) 10月까지의 28月間

〈表 10〉 閔善重監司 在任當時 狀啓內容

(顯宗 10年6月~12年10月)

狀 啓 內 容	件 數	狀 啓 內 容	件 數
大 旱	6	大水, 急雨, 淚死	10
飢 民, 餓 死	17	漁 人 淚 死	1
恤 典 要 求	6	大 風	2
稅 減 免 要 求	2	閭 家 失 火	1
田 結 降 等 要 求	1	下 雪 (4月)	1
棄 兒	1	霜 降 (4月末)	1
惡虎 橫行 咬殺人	1	雷 震 死	1
盜 賊 橫 行	1	地 震	4
旱害로인 骨肉之變	1	道內 善賑守令 報告	1
牛 疫	2	旌 褒 要 求	1
癟 疫 漸 熾	1	合 計	62

資料：顯宗實錄

에 걸쳐 閔 監司가 朝廷에 狀啓한 內容을 〈顯宗實錄〉에 依據 살펴보면 〈表 10〉과 같다. 이 때 閔善重 監司가 朝廷에 啓聞한 狀啓件數는 總 62件으로서 旱害에 관한 內容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니 즉 大旱 6件, 飢民·飢死가 17件, 稅減免·田結降等 등 賑恤事が 9件 등 都合 32件으로 全體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旱害에 隨伴한 것으로서 骨肉之變, 閭家失火, 惡虎橫行, 牛疫, 癟疫 등 事件도 크게 發生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旱害가 持續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로는 部分的으로 水災를 당하는 일도 많았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같이 災害가 크게 發生할 때 監司는 救荒策으로 朝廷에 稅額減免이나 貢物廢止, 賑財 등 恤典施行을 要求하기도 하고 예로는 空名告身의 發行을 要求하여 그 收入穀을 賑資에 補充케 하였던 것이다. 한편 慶尙道 監司 閔善重은

「慶尙監司閔善重請得戶曹所管本道稅鹽及火田米補用賑資 上許之」⁹³⁾

와 같이 戸曹 所管의 本道 稅인 鹽과 火田米를 賑資에 補用할 것을 請하여 王으로부터 允許받았던 例도 있고 예로는 監司의 狀啓로서

「嶺南飢甚田稅難拏因道臣狀請許令以布代納」⁹⁴⁾

89) 註13同書, 戶典, p. 396.

90) 仁祖實錄, 卷39 仁祖 17年 12月 壬辰 條.

91) ㄱ. 註9同書, 上 p. 186.

ㄴ. 註13同書, 戶典, 收稅 條, pp. 396~398.

92) 萬機要覽, 財用編 五, 恤典 條을 參照하면, 朝鮮時代 外方 恤典의 對象으로서는 全家燒燬, 漂戶, 燒死, 淚死, 虎覽死, 壓死, 遣棄兒, 過期未婚女, 未葬 등으로서 이들에게는 각기 規定된 量의 恤典이 있었다.

93) 顯宗實錄, 卷18 顯宗 11年 8月 甲辰 條.

94) 肅宗實錄, 卷13上 肅宗 8年 3月 甲寅 條.

<表 11>

慶 尚 道 災 害 現 況 (顯宗年間)

年 代	方 痛 人	身 故 (死 亡)	飢 民	年 代	方 痛 人	身 故 (死 亡)	飢 民
顯宗 2年 5月 己未	18,090	938	47,500	顯宗 12年 2月 乙未			300
" 3年 2月 己酉	3,642	53		" " 2月 甲辰			200
" " 2月 丙寅	12,710	297	82,253	" " 3月 辛亥			90
" 5年 2月 辛丑	871			" " 3月 乙卯			140
" " 3月 戊辰	1,529		74,105	" " 3月 丙寅			115,670
" " 3月 辛巳	4,284		113,438	" " 5月 己巳			590
" " 5月 壬午	1,617		170,604	" " 7月 壬申			3,650
" 9年 3月 壬戌	230			" " 7月 乙亥	2,692		372
" 11年 3月 甲子	1,000			" " 7月 丁丑			132,897
" 12年 正月 乙卯	200		5,100	" " 8月 戊子			557
" " 正月 辛未			11,553	" 13年 4月 丙子			163,149
" " 2月 乙酉			23,553	" 15年 6月 己未			330,000
							38,720

資料：顯宗實錄、顯宗改修實錄。

라 하여 飢甚하면 穀으로 納付하던 田稅를 布로서 代納케 하는 境遇도 있었다. 한때 朝鮮中期 이후에는 國家의 財政이 戰亂, 天災之變 등으로 因하여 枯渴되자 國庫를 補充하는 方法으로서 官吏의 職牒을 米穀 또는 金錢으로 賣買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職牒을 空名告身(空名帖)이라 하였다. 空名告身이란 지금의 官吏任用狀 또는 辞令狀으로서 職牒의 形式은 같으나 다만 姓名欄에 空欄을 두고서는 賣買時 相對方의 姓名을 記錄하여 發給하였는데 朝鮮王朝는 身分社會였으므로 中人 이하 身分層에서 크게 呼應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災害가 크게 發生할 때 監司는 空名告身의 賣買에 따른 收入穀을 賑資에 補充하기 위해 朝廷에 問啓로서 發行을 要求하였다. 「仁祖實錄」에 의하면

「慶尚監司李曼馳啓請下送空名告身一百張募得穀物以振飢民之被水災者 許之」⁹⁵⁾

와 같이 慶尚監司 李曼의 問啓에 依據 飢民 救護를 위해 空名告身 100張의 下送를 請하여 王으로부터 允許 받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朝鮮王朝 官吏의 경우는 朝廷으로부터 職務의 忠誠을 要求한 반面, 反對給付로서 一定量의 規定된 債祿을 支給받았는데, 旱害를 포함한 각종 災害가 發生하여 被害狀況이尤甚할 때면 債祿을 停 또는 減하기도 하고⁹⁶⁾ 地方官吏를 減縮하는 사례도 있었으니 「顯宗實錄」에 의하면

「權寵慶尚道安東慶州兩府判官以年凶也」⁹⁷⁾

로 미루어 國家 財政의 壓迫感을多少나마 덜어 보자는 意圖에서 慶尚道의 安東判官과 慶州判官은 權寵剝다고 하겠다.

朝鮮王朝에 있어서 旱害를 포함한 各種 災害의 被害

상황이 顯宗朝～肅宗初에 이르기까지尤甚했다는事實에 대해 上述한 바도 있지만, 여기서 顯宗年間에 發生한 飢民, 瘟疫에 의한 方通死亡 등 災害 상황을 「顯宗實錄」과 「顯宗改修實錄」에 依據하여 살펴보면 <表 11>과 같다. <表 11>의 數值가 때로는 重複될 수도 있겠지만當時 慶尚道 人口가 149萬名⁹⁸⁾으로 計算할 때 飢民의 數가 顯宗 12年 5月이 242,500名, 顯宗 13年 4月의 경우 330,000名이라 하면 그 數는 엄청난 것이고 被害 상황도極甚했다는事實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被害 상황이 때로는 被害地의 守令들이 善賑의 功績을 認定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事後 責任과 問責이 두려워 被害報告를 漏落시키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顯宗實錄」을 보면

「八道人民飢餓瘡疫及痘疫死者不可贍記而三南尤甚至溺水燒死虎咬死者亦多古老言此等景象有生以後所未嘗見聞死亡之慘有加於壬辰兵禍云然守令之所報特舉粥所致斃者而已村落飢死道路餓莩率多不載甚者要得善賑之名爭相搶置多不以實啓聞之數僅十之一二焉」⁹⁹⁾

이라 하여當時 被害 상황이 壬辰兵禍를彷彿케 했음을 알 수 있으나 地方 守令들이 賑政을 잘 收拾하게 되면 이에 따른 褒賞이 주어지므로 善賑이란 功名心 때문에 被害 report를漏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 때 被害의 實 啓聞數도 全體 被害의 10分之 1 내지 2程度

95) 仁祖實錄, 卷49 仁祖 26年 6月 甲辰 條.

96) 顯宗實錄, 卷21 顯宗 14年 12月 己亥 條를 보면 「…被災之邑減米布之半次者減三分之一 諸臣皆停減月課米」라 하였다.

97) 顯宗實錄, 卷19 顯宗 12年 2月 辛丑 條.

98) 肅宗初期 人口의 實例로서, 李聃命著, 靜齋先生文集, 卷2 「論賑事疏」를 보면 「…一道人口以帳籍所在考之其數將近一萬四十九萬…」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99) 顯宗實錄, 卷19 顯宗 12年 2月 己酉 條.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注目된다 할 것이다.

다시, 慶尙道의 救荒에 대한 實例로서 萬宗 16年(1690) 8月에 到任한 慶尙監司 李聘命을 土臺로 살펴보면, 李聘命은 本道 漆谷에 居住했던 사람으로서當時 规定으로 볼 때 本道人은 慶尙監司에任命될 수가 없도록 规定하고 있었다.¹⁰⁰⁾ 그러나 旱害가 持續되자 朝廷에서는 救荒策의 遷任者로서 그를 特別히 除授하였던 것이다. 李聘命이 慶尙監司로 到任하여 旱害狀況을 調查해 보니 당시 慶尙道 人口 149萬餘名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106萬餘名이 旱災民으로 集計되었는데¹⁰¹⁾ 이들에 光한 賑政을 遂行하는 과정을 〈靜齋先生文集〉에 依據하되,

「…到營後多方料理所聚穀數十萬石於是周巡列邑按視方曲第其被災荒甚與不甚邑爲四等一邑之內又第其甚與不甚坊爲三等是年征役連耀隨其爲差以次蠲除所聚穀分俵列邑者亦視此而多少區分飢民男女丁壯老弱等三等方春賑施一率…」¹⁰²⁾

이라 하여 到營 후 각處 米穀 10萬石을 모아, 道內 列邑을 巡視하여 被害狀況을 調查 災害의 甚不甚에 따라 각邑을 4等分 하고 이어 一邑에서도 甚不甚에 따라 다시 3等分 하였으며, 飢民도 男女 丁壯 老弱으로 3等分하여 分配하는등 賑政을 잘 다스렸던 것이다. 특히 李聘命은當時湖南에서 朝廷에 上納하던 穀物을 朝廷의 決定없이 洛東江沿岸에 下船을 命令하여 이 穀食을 끌어 道民을 救荒하였으니 이 때 朝廷大臣들은

「大臣陳白於 上前曰某爲監司不稟于朝廷不議于京司任意擅斷而後始報而京司不從則恩歸於方伯怨歸於朝廷終始持之不已何言之至此之甚也吾雖不辨人必有知我赤心爲國者矣」¹⁰³⁾

와 같이 大臣들이 國王前에 陳白하기를 慶尙監司 某가 朝廷에 啓稟도 아니하고 또 한 京司에 議論敘이 任意로 擅斷한 후 처음으로 報告하였으므로 京司에서도 不從하였으니 즉 恩惠는 監司에 둘리고 怨望은 朝廷에 둘리는 處事라하여 李聘命을 賏責하는 論議가 甚하였다. 이 때 李聘命은 내 비록 辨明은 않겠으나 사람들은 必히 盡忠報國하는 나의 心中을 알아줄 것이라 하였고. 또한 上疏하기를

「以爲民命急於朝夕而廟議緩於旬月…」¹⁰⁴⁾

이라 하여百姓의 生命은 朝夕에 달려있고 朝廷의 論議는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朝廷

으로부터自身의 祸를 免하였다 것이니當時 李監司의 智慧와 功勞로서 道民을 크게 賑救하였다는事實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監司가 眞情 民을 위한 政治를 行함에 있어서도當時의 地緣, 血緣이나 黨色 등으로 因하여 危急에 처한 前後事情 묘다는 主로 平常時 通用되는 國法으로 責任을 물어 改差 또는 龍職되는 事例가 많았던 것이다.

3. 教育

朝鮮王朝에서는 國初로부터 農桑과 興學政策을 國家의 統治理念으로 삼아 中央에 成均館을 設立하여 人才養成에 主力한 反面, 地方마다 鄉校를 一邑 一個校로 設立하여 民風醇化, 地方民教化 등 崇儒主義에 立脚한 教育事業에 크게 置重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前述했던 바와 같이 守令이 辭朝할 때 告하는 守令七事의 宣誓가운데 「學校興」이 守令職務上 매우 重要하였으며 監司는 이를 包含한 守令七事 全般에 대해 考課를 評價하고 等數를 定하여 每年 6月과 12月, 2次에 걸쳐 朝廷에 報告하는 등 守令褒貶權을 行事하였던 것이다.¹⁰⁵⁾ 그러므로 守令은 恒時 鄉校를 巡訪하여 建物의 修理與否, 器物의 損傷與否 등을 調查하고 交替나 補修하여 鄉校 文廟의 釋奠祭도 精誠을 다하여야 했던 것이다.¹⁰⁶⁾ 監司는 每年 列邑을 巡視할 때 鄉校에 들려 講義도 하고¹⁰⁷⁾ 여기서 鄉校 器物의 損傷이나 建物補修 與否, 釋奠儀式關係 教育關係 등을 일일이 點檢하여 該邑 守令을 評價하였던 것이다.¹⁰⁸⁾ 그러나가 朝鮮中期인 中宗 37年(1542) 周世鵬이 講學과 祀賢을 目的으로 한 白雲洞書院 創建을 始初로 하여 全國到處에서 書院이 勃興하였는데 이와함께 鄉校의 講學機能은 相對的으로 衰退하였던 것이다. 한편 書院에 있어서도 時代의 흐름에 따라 當初 目的과는 달리 講學보다는 祀賢機能에 치우치게 되고 其他也是 同色의 黨派단이 參與하는 黨色 助長機構로 轉落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書院의 弊端으로 因하여 朝廷에서는 書院에 대한 設立이나 運營 등 諸事에 積極 強力히 統制하였으나 書院에 參與하는 者 가운데는 實權있는 朝廷의 官僚나 儒林을 비롯하여 到處의 同色出身 儒生輩의 殘滓로 因하여 큰 實效를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鄉校의 講學機能의 衰退와 書院의 作弊로

100) 註13 參照.

101) 李聘命, 靜齋先生文集, 卷2 論賑事疏 條.

102) 上揭書, 卷8 附錄, 姜楷 撰 李聘命行狀.

103) 上揭書, 卷4 記嚴伯時賑恤事 條.

104) 上揭書, 卷8 附錄, 柳致明 撰 李聘命墓誌銘.

105) 大典通編, 卷1 吏典, 褒貶 條.

106) 註13同書, 工典, p. 535.

107) 上揭書, 禮典, pp. 147~8.

108) 大典通編, 卷3 禮典, 雜令 條.

地方教育에 實效를 얻지 못하자 慶尙道에서는 景宗元年(1721)當時 趙泰億 慶尙監司가 道內의 文才있는 有能한 人才를 養成하고자 하는 意圖에서 教育機關인 樂育齋를 設立하였던 것이다.¹⁰⁹⁾ 樂育齋의 設立目的은 人才養成과 文風振興에 있었던 것이며 그 機能으로서는 講學을 포함하여 讀書, 詩賦의 製述, 研學, 討論 指讓禮 등 廣範하였는데 특히 樂育齋는 慶尙監司 直屬下에 있는 官立學校와 官立圖書館이란 兩大機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當時 中央과 비교한다면 讀書堂, 奎章閣, 成均館의 機能을 包括하는 重要 教育機關이었던 것이다.¹¹⁰⁾

樂育齋의 設立初期에는 人才養成이란 當初目的한 기대에 큰 效果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는當時設立者인 趙泰億 監司가 黑色面에서 考察해 볼 때 少論의 強硬派라는 事實과 또한 少論이 英祖의 登極으로 政界에서 失勢되었다는 點에서 英祖初, 朝廷에 進出한 老論側의 家門에서나 嶺南地方 到處의 많은 南人家門으로부터 쉽게呼应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밝어지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樂育齋는 設立된지 不過 몇년 가지 않아 荒廢해 지고 學風도 衰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후 樂育齋를 正常的인 軌道에 이르게 한 者는 趙顯命 慶尙監司(1730年7月~1732年10月在任)라 할 수 있으니 당시 趙顯命 監司는 黑色의 執權層인 老論이었으나 英祖의 荫庇策을 크게 支持하는 등 王을 도와 忠實하게 輔弼한 者이다. 그런 관계로 人才를 養成함에 있어서나 人才薦舉 등에 있어 黑色派를 대 세우지 않았던 사립이 있다.¹¹¹⁾ 趙顯命은 英祖6年(1730)7月에 慶尙監司에 來任하여서는 到任當時로부터 10餘年前 趙泰億 監司가 設立하였던 樂育齋를 重創再建하고, 勸學節目을 作成, 慶尙道내에 通諭하여 黑色不問하고 優秀한 人才를 많이 參與하였다. 그리고는 樂育齋의 儒生選拔과 居齋, 課業 등에 따른 學規를 定하고 地田을 두어 그 所出로서 諸經費에 充當케 하는 등 國家棟樑을 만드는데 心血을 다하였다.¹¹²⁾ 이 밖에도 趙顯命 監司는 嶺南의 人才를 朝廷에 많이 薦舉하여 人才養成과 本道의 文風振興에 크게貢獻하였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樂育齋는 朝鮮後期에 있어當時 71邑 嶺南의 唯一한 道立學校와 道立圖書館의 兩大機能을 가지 고 鄉土文化發展 대처 國家 人才養成政策에 크게 寄與하면서 韓末까지 存續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光武10年(1906) 日帝의 입김으로 樂育齋는 撤廢되고 그 財產으로 設立한 現代의 教育機能을 가진 協成學校로 繼承되었다가 1916年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로 이어져 現在까지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¹¹³⁾

4. 出版文化

監司가 地方民을 教化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教育機關을 통하여 教育이나 教化하는 方法도 있겠지만 그 밖에도 三綱行實·五倫行實圖 등 三綱에 模範이 되는 書籍이나 小學書 四書三經 등 儒學獎勵에 필요한 각종 書籍을 刊行 配布 함으로서 地方 文風振興에 寄與하는 方法도 있었던 것이다. 朝鮮時代에 刊行한 圖書의 版種을 살펴보면 校書館(芸閣), 奎章閣, 內醫院 등을 포함한 中央官署 또는 監營, 兵營各邑에서 刊行한 官版과 書院, 寺刹, 門中, 私家 등에서 刊行한 私版으로 크게 區分되는데 官版은 大概가 三綱五倫, 小學, 四書三經 通鑑 등 經世治民에 所用되는 書籍이 質고 書院, 門中, 私家 등의 私版은 個人文集 刊行이 大宗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監營에서 刊行한 圖書의 경우는 中央의 命令으로 刊行하여 上送하는 例도 있지만,

<表 12> 慶尙監營 典籍刊行 分類別 現況

分類		種數	分類		種數
經	三經類	7	道釋家	家數	4
	四書類	8	釋術書	數	
	禮書 <small>(韓國中國)</small>	10	字韻類	書錄	
	春秋類	6	雜家	隨錄	
	孝經類	1	兵家	家	3
	總樂書類	1	農家	家	
	小學類	2	醫家	家	
	計	35	天文	法算	7
史	史籍 <small>(韓國中國)</small>	1	法譯說	帖學	2
	詔令·奏請類	13	小計	家計	
	存業	7	別集 <small>(韓國中國)</small>	34	25
	傳記, 族譜類	1	總集	中國	
	政書, 職官, 時令	11	詞曲集	3	3
	地理錄	11	楚辭	曲辭	
	目錄	44	小計	計	2
	小計	44	合計	計	
	儒家	9	合計	計	151

資料: 嶺營事例 韓國書誌年表
韓國古書綜合目錄, 기타

109) 註2同書, 163頁.

110) 張仁鎮, “嶺南 樂育齋考.”(大邱市立圖書館報, 第3號, 1978), pp. 89~114.

111) 趙顯命 監司가 在任當時 朝廷에 薦舉한 嶺南의 人才를 살펴보면 南人的 金聖鐸, 李光庭, 李萬敷, 李慢, 蘆啓元 등과 少論의 鄭萬陽, 鄭葵陽, 老論의 成爾鴻 등을 들 수 있다.

112) 嶺營事例(大邱: 慶尙監營, 1841頃, 筆寫本, 1冊), 樂育齋條(曉星女大圖書館所藏).

113) 張仁鎮, 前揭論文, pp. 95~108.

한편으로는 監司가 地方의 文風과 民風醇化에 目的을 두고 獨自의으로 刊行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朝鮮後期 慶尙監營에서 刊行한 圖書의 種數는 全體151種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圖書의 種數를 經史子集으로 分類해 볼 때 <表 12>와 같이 經世濟民에 所用되는 書籍이 많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慶尙監營에서는 他道監營에 비하여 圖書를 많이 刊行하였는데¹¹⁴⁾ 특히 監營에서 圖書刊行時 作業過程의 式例를 살펴볼 때 圖書刊行에 필요한 物品은 各邑에 分定하였으며, 用役인 工匠으로서는 刻手, 木工, 小木匠, 治匠 등을 두어 이들에게는 規定된 料米를 날마다 支給하고 또한 作業能率에 따라 別途의 功錢을 支給하기도 하였다. 慶尙監營에서 發行한 <嶺營事例>의 「刊役式例」에 의하면 圖書刊行에 必要한 物品은

「冊板粧頭木鐵釘等物各邑分定…七書新刊次庚辰等內節目各邑分定冊板每立粧頭木鐵釘價并代錢二兩」¹¹⁵⁾

라 하여 冊板을 비롯하여 粧頭木과 鐵釘 등 圖書刊行에 필요한 物品은 各邑에 分定하여 差出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四書三經 즉 七書新刊時의 庚辰等內節目을 따르면 各邑에 分定差出하였던 冊板을 비롯한 粧頭木, 鐵釘의 價格으로서는 代錢으로 二兩을 支給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刊役에 필요한 人員으로서 刻手, 木手, 小木匠, 治匠 등의 紙料에 있어서는

「刻手一名一日料米二升七合菜蔬價三分醬二合鹽一合藿一兩 俗人則加明太三尾木手一名小木匠一名料功錢并三錢三分治匠一名料饌上下」¹¹⁶⁾

와 같이 刻手의 경우는 大體로 僧侶가 擔當하였으며 刻手 1名當 1日 支給 範圍가 料米는 2升 7合, 菜蔬價가 3分, 醬이 5合, 鹽이 1合, 그리고 蕷(미역)은 1兩으로 支給하였는데 俗人의 경우는 明太 3마리를 加給하였다. 그러나 木手와 小木匠은 各 1名에 대해 料功錢으로서 3錢 3分을, 治匠 1名에 대해서는 料饌으로서 上下로 支給한다 하였으므로 이들에게는 作業能率에 따라 紙料가 支給되기도 하였다. 한편 刻手에게는 위의 紙料 외에도 别途의 功錢을 支給하였으니

「刻手功錢畱論大小字(每百字錢四分木四寸)畢役後有別帖下」¹¹⁷⁾

라 하여 刻手에게 支給하는 功錢은 刻字의 數에 따라 定해졌는데 즉 大小字를 막론하고 每百字에 대해 錢 4分을 支給 하였으며 役事を 마친 후에 功錢은 别途로 帖下 즉 一種의 手票로 支給하였다 것이다. 또한 刊役

에 必要한 供饋에 대해서는

「供饋僧天柱寺僧舉行或雇立炊飲木房木燈油隨所入上下代立 隱跡庵僧壬戌爲始」¹¹⁸⁾

와 같이 供饋 擔當 僧으로서는 天柱寺¹¹⁹⁾ 僧이 舉行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代身하여 이를 맡게 하였으며 炊飲木이나 房木 그리고 燈油 등 調達의 擔當者는 隨時로 上下 交代케 하였는데 隱跡庵¹²⁰⁾ 僧은 壬戌年¹²¹⁾에 처음으로 供饋를 擔當했음을 알 수 있겠다.

위 내용을 土臺로 하여 開板에 따른 事項을 再檢討해 볼 때 木板의 刻字를 비롯한 刊役에 있어서의 作業場所는, 監營을 비롯하여 監營所在地인 大邱府와 그周邊의 寺刹에서도 많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刻手의 境遇도 刻板에 能熟하였던 僧侶들이 監司의命을 받아 開板에 많이 參與하였다 것이다. 특히 <嶺營事例> 营冊板條에 나타난 冊板은 監營이 主管하여 開板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徐有渠의 <鑄板考>에 나타난 各 寺刹藏板을 살펴볼 때 監營冊板이 大邱周圍의 寺刹인 龍淵寺, 桐華寺, 溪泉寺, 天柱寺 등에 대부분 藏板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冊板이 寺刹板으로 誤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當時 監營에서 主管하여 完成한 冊板이라 할지라도 刻手가 대체로 僧侶라는 事實과 함께 刊役場所 또한 이 곳 寺刹인 경우는 冊板을 구하여 監營으로 移送한 必要性이 적기 때문에 寺刹에 그대로 藏板하여 管理도록 했다 하겠다.

圖書刊行에 있어서 木板本인 경우는 冊板 材料의 選擇이 매우 重要하였다. 예로부터 冊板 材料로서는 木理가 좋고 堅固한 桦木을 많이 使用해 왔다. 하지만 이와같은 良材도 加工없이 그대로 刻字하여 使用한다면 時日이 흐름에 따라 蟲蟲에 의한 磨減, 腐敗 또는 木理에 의한 分裂 등으로 當初 莫大한 時間과 勞力으로 完成한 冊板이 繼續되어져야 할 圖書印出事業에 있어 제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先賢들은 圖書刊行의 源泉이 되는 冊板을 磨減 없이 오래도록 保管하

114) 徐有渠著, 洪命憲校訂, 鑄板考(서울:實蓮閣, 1968, 影印本)에 의거 각道 監營의 冊板을 調査해 볼 때 他道에 比하여 慶尙監營이 크게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5) 註112同書, 营冊板, 刊役式例 條, 1行.

116) 上揭書, 同條, 2行.

117) 上揭書, 同條, 6行.

118) 上揭書, 同條, 7行.

119) 漆谷郡 嘉山山城에 所在한 것으로 當時 慶尙監營 直轄寺刹임.

120) 大邱市內 大德山에 所在하고 있는 庵子로서 高麗太祖 19年(936)에 創建.

121) 壬戌年에 대한 確實한 年代는 알 수 없다. 하지만 冊板의 刊記에 의할 때 壬戌年에는 大學, 中庸, 論語를 포함한 7書와 7書解의 重刊 등 刊行事業이 龄大하였으므로 1742年 아니면 1802年으로 推定된다.

<表 13>

慶尙監司遞去現況

朝別 監司數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計	%	
區分		6	15	28	10	13	40	6	41	19	21	10	13	16	238		
內職	陞進·榮轉	3	2	11	3	5	22	3	22	4	10	6	8	7	106	44.5	
	移拜		2		3	4	3			1		4	1	1	13	5.5	
	遞兒職			3		2	2		4		4	1	1	1	17	7.1	
	小計	3	2	16	6	11	27	3	26	4	11	10	9	8	136	57.1	
外職							2								1	3	1.2
計		3	2	16	6	11	29	3	26	4	11	10	9	9	139	58.3	
瓜滿遞				5	3	1					1	1	1		12	5.1	
卒逝					2			2		1	1	1		1	2	10	4.2
彈劾	拿命龍			1	1		4			4	1				11	4.6	
	啓遞筵榮遞	2	1	4	1	1	3	2	7	5			2		26	11.0	
	小計	2	1	5	2	2	7	2	11	11	2			1	11	4.6	
													2	1	48	20.2	
自意辭職	呈辭	1	6	1			1	1	2	2	4			2	20	8.4	
	親喪			1	1				1		1		1		4	1.7	
	小計	1	6	2	1		1	1	3	2	5			2	24	10.1	
未詳				1				1				1			2	5	2.1
合計		6	15	28	10	13	40	6	41	19	21	10	13	16	238	100	

資料：朝鮮王朝實錄，慶尙道先生案，大丘府邑誌

기 위한 方法으로서 材料를 손쉽게 加工한 후 刻字하여 使用했으니

「烹板木一釜所入冊板五立木二束鹽一升五合」¹²²⁾

이라 하여 科學的 方法으로서 板木을 소금물에 삶은 후에 刻字하였으니 즉 1개의 솥에 冊板 5개를 넣고 鹽 1升5合을 配合한 후 烹木 2束으로 삶아서 使用했던 것이다. 板木을 소금물에 삶게 되면 冊板을 오래 두어도 蟲蟲의被害를 크게 막을 수 있으므로 이후 藏板된 內容의 圖書가 必要할 때면 언제든지 印出하여 閱覽에 寄與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遷官 및 遷去

八道監司 가운데 慶尙監司는 專制地域이 文風의 고장이란 점과 아울러 地域도 廣大하여 他道의 監司보다는陞進의 優先權이 주어졌다 할 수 있어 外職 가운데 가장 榮譽로운 要職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慶尙監司職에 除授된 者는前述한 바와같이 歷朝를 통하여 玉堂兩司翰林 등 清要職出身이 많았음은 물론 學識과 德望이 뛰어난 者에 대해서는 비록 外職의 守令이라도 慶尙監司로 拨擢되었던事實로 미루어 大部分의 監司가 文風에 크게 寄與했다고 보아진다.

한편 慶尙監司의 遷官도 内外職의 要職에 榮轉된 者

가 많았다 하겠으니 <表 13>을 보면 全體監司 가운데 139人인 58.3%가 内外職에 遷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陞進 또는 榮轉으로 볼 수 있는 者는 106人인 44.5%, 爰知中樞府事, 敦寧府都正, 判決事 등 内遷된 者가 13人인 5.5%, 그리고 五衛의 大護軍, 護軍, 副護軍 등 遷兒職으로 遷官된 者는 17人인 7.1%로서 都合 136人인 57.1%가 内職에 遷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外職에 遷官된 實例는 극히 드물어 監司 1人, 留守 2人, 都合 3人에 지나지 않고 있어 慶尙監司의 内職陞進序列이 어느 職責보다도 높다는 事實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當初 慶尙監司 除授當時의 前資를 <表 16>에 의거할 때, 他道監司에서 慶尙監司로 除授된 者는 20人인데 反하여 本 慶尙監司가 他道監司로 遷官된 것은 韓末인 高宗朝의 1人을 제외하고는 全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慶尙監司는 他道監司보다도 優位에 位置한 要職이란 것을 立證해 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内職에 遷官된 者 136人의 경우도 그官職이 六曹判書, 護政府參贊, 漢城府判尹 등 9卿을 포함하여 敦寧府, 中樞府 등의 知事, 備邊司掌上, 奎章閣提學, 大司憲 등 高級官僚로 進出한 者가 많았다는 事實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이를이 當初 慶尙監司職에 除授되며 이전부터 높은 官階로서 이와 같은 官職을 歷任한 者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들이 慶尙監司

122) 註112同書, 計冊板, 刑役式例 條, 5行.

의 職務遂行으로서 再信任을 얻게된所致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上述한 內外職 遷官者를 除外한 慶尙監司의 遷去現況을 <表 13>에서 살펴볼 때 任期가 滿了되어 遷去된 者는 12인인 5.1%이고, 在任中 死亡한 者는 10인인 4.2%, 그리고 各種 事件에 連累되었거나 職務怠慢 등으로 인하여 彈劾을 받고 拿命이나 罷職 遷去된 者는 48인인 20.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彈劾을 받게된 事由를 「慶尙道先生案」·「大丘府邑誌」등을 포함한 各種 文獻에 의거하면, 士人 또는 士女의 非行 上疏, 前任時事, 各種查啓事, 查狀遲滯, 身病廢務事, 書院事, 田結見漏事, 倭接時見朝命不爲傳諭事, 辭職上疏中侵侮大臣事, 請蠲民役疏中句語未安事, 離貶過限封進事, 上不寧時設壽宴事, 禁內登盤事, 繡啓 등과 같이 나타남으로써 彈劾內容이 대체로 王命不從, 職權濫用, 職務怠慢 등으로 要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本人의 身病이나 親病, 老父母의 奉養, 掘墳等事로 辭職上疏를 올리는呈辭나 親喪 등 自意에 의거 遷去된 者는 24인인 10.1%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瓜滿遞나呈辭遞去한 者 가운데는 遷兒職에 遷官된 者도相當數 있으리라 믿어지나 參考文獻이 적어 詳細히는 알 수 없는 것이다.

慶尙監司가 任期를 마치고 遷任할 때는 앞서 論及했음과 같이 鳥嶺交龜亭에서 後任者와 面看交代하였는데 특히 前任監司는 監營의 全般的 事項에 대해 引繼文書인 重記를 作成해야 하며, 引繼時 行政權의 象徵인 印信과 軍令權의 象徵인 發兵符의 引繼와 함께¹²³⁾署名한 重記를 新監司에 引繼함으로서 交代의 節次는 모두 마쳤다고 하겠다. 그러나 一道 最高의 軍政權을 表象하는 것으로서 發兵符보다 重한 密符는 承政院에 親納하였으니 「大典通編」을 보면

「將臣藩臣帥臣遞歸密符命召必親納政院(或無職或有故者親納闕外不遵命者卿宰重推通政禁推守職者以本資論)」¹²⁴⁾

라 하여 遷歸하는 監司가 密符를 親히 返納토록 规定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기게 될 때 卿宰의 경우는 嚴重推考하였던 事實을 考察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親納한 密符는 國王이 符를 바꾸어서 다시 諭旨와 함께 新監司에게 내려주게 되었으니 즉 「世祖實錄」을 보면 世祖가 黃海監司 金脩에게 내린 諭旨의 內容이

「諭黃海道觀察使金脩曰卿受委一方體任匪輕凡發兵應變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豫與卿獨斷處置事則非密符莫可施爲故賜親押第二十四符卿其受之」¹²⁵⁾

와 같이 卿은 一地方의 政治를 委任 받았으니 責任이 가볍지 아니하다. 무릇 兵事を 發하여 變에 對應하고百姓을 慎安하 하고 敵을 制御하는 것이 一應常事에 해당한다면 이는 바로 옛 典章에 있다. 혹시 나와 卿이 獨斷하여 處置할 일이 있게 되면 密符가 아니고서는 施行할 수 없을까 念慮한다. 그러므로 親히 署押한 第二十四符를 내려주니 卿은 이를 받으라, 라고 하였으므로 密符가 重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위에 나타나고 있는 <第二十四符>라는 數值은 바로 密符의 中核이 되는 名稱인 것이다. 그러므로 一道 最高의 軍政權을 象徵하는 密符는 國王과 監司가 獨斷 處置할 수 있는 密事이므로 監司 職務 가운데서 가장 所重히 하였는데 이와같은 密事が 담긴 密符를 後任監司와 相面引繼한다면 秘密이 露出될 念慮가 있으므로 遷任監司는 承政院에 親納토록 规定하였고, 新監司에게는 國王이 다른 數值의 密符를 諭旨와 함께 내려 監司와의 密事를 保全하였던 것이다. 한편 遷歸하는 監司에게는 退任時公式적으로 送別宴을 베풀어 주었으니 즉 「中宗實錄」을 보면 「禮曹啓曰監司使餞宴國有常規…」¹²⁶⁾라 하여當時 退任監司에게 送別宴을 베푸는 것은 國家의 常規라는 事實을 알 수 있으며 또한 前後監司의 交代에 따른 各種儀式도 그 당시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나 文獻이 적어 알길이 없다 하겠다.

다시 在任監司로서 善政한 事實을 「大丘府邑誌」·「朝鮮王朝實錄」 또는 善政碑를 포함한 各種 史蹟을 土臺로 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善政碑라는 것은 地方官이 政治를 行함에 있어서 善政을 베풀고 退任하게 되면 該地方官民들이 그간의 恩惠를 鈦慕하여 세웠던 去思碑 清德碑 不忘碑 善政碑 등 各種 頌德碑를 말한다. 이러한 頌德碑가 세워지게 되면 當該 本人은 물론 그 後孫들에게는 代代로 家門의 荣光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관계로 一部 地方守令들은 在任時自身의 頌德碑를 세우기에 血眼이 되기도 하여 在任中에 頌德碑를 미리 만들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頌德碑 濫設이 朝鮮後期에 접어 들면서 크게 活潑해지자 朝廷에서는 이것을 嚴하게 規制하기도 했으니 <仁祖實錄>을 보면

「又啓曰…守令之以遺愛立碑者中古以上絕無而僅有近日爲守牧者專事于譽先立木碑又立石刻而夷考其績少無實效人心日下諂媚成風爲當今難祛之弊請令各道監司一切嚴禁如有無聲績而于譽立碑者重治…答曰依啓」¹²⁷⁾

123) 註44 參照.

124) 大典通編, 卷4 兵典, 符信 條.

125) 世祖實錄, 卷19 世祖 6年 正月 乙酉 條.

126) 中宗實錄, 卷62, 中宗 23年 7月 丙子 條.

127) 仁祖實錄, 卷25, 仁祖 9年 12月 庚辰 條.

<表 14>

慶 尚 監 司 善 政 實 繢

朝別	監司名	善政事實 또는 善政碑	朝別	監司名	善政事實 또는 善政碑
仁祖	李敬與	去思碑	純祖	李存秀	救荒賑飢, 享尚德祠
"	李命雄	嘉山山城築城	"	鄭基善	永世不忘碑
顯宗	李尙真	本道庶廩十條狀啓, 更道確立, 築城建議	"	李勉昇	清德碑
"	閔善重	救荒賑飢, 清德碑, 不忘碑有	"	徐慈淳	捐俸以減一府之遷耗每石頭五升, 不忘碑
"	李顥翹	大振飢民, 府人立祠(尚德祠)	憲宗	趙秉鉉	不忘碑
肅宗	李聘命	救荒賑飢, 遺惠碑	"	權敦在	去思碑
"	李彥紀	清德善政碑	"	洪大根	善政碑
"	金演	去思碑	哲宗	徐箕淳	清白著名, 清德去思碑
"	洪禹寧	善政碑	"	李紀淵	善政碑
"	吳命恒	架山·禿用·烏嶺·蘆石, 四山城設	"	金學性	去思碑
景宗	趙泰億	樂育齋創設	"	洪祐吉	清德善政碑, 不忘碑
英祖	趙顯命	救荒賑飢, 樂育齋重創教學振興	"	金世均	永世不忘碑, 遺愛碑
"	金始爌	教學振興, 永世不忘碑	"	徐憲淳	廉直, 清德善政碑
"	閔應洙	大邱邑城石築, 永世不忘碑	高宗	李參鉉	不忘碑
"	俞拓基	賑飢蠲稅, 不忘碑, 享尚德祠	"	金世鑄	大邱邑城重修, 休念保障矯救社弊
"	李益輔	救荒賑飢	"	朴齊寅	不忘碑
"	趙曠	左右漕倉 및 屬倉設置	"	李根弼	清德碑
純祖	尹光顏	樂育齋重修(藏書閣·觀善堂創)教學振興	"	趙康夏	善政不忘碑
"	鄭晚錫	役弊等六弊陳疏, 愛民善政碑	"	南一祐	啓罷各倉遷耗防府民戶稅, 不忘碑
"	金會淵	道民雜賦金禁, 信需穀儲置, 享尚德祠	"	金明鎮	清德愛民不忘碑
"	金義淳	不忘碑, 享尚德祠	"	閔正植	不忘碑
"	金魯應	祛弊不忘碑			

라 하여 각종 頌德碑 濫設이 仁祖朝 이후 活潑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守令들은 在任時 名譽을 얻고자 木碑나 石刻碑를 세우는 것이 專事라 하였으니 後日 그事實을 살펴보면 實際 政治에 따른 功績은 매우 적었는데 이렇게 될 때 百姓들로부터 阿諂하는 風土가 助長되는 效果를 가져온은 물론이다. 司諫院에서는當時 難祛之弊였던 이것을 監司에게 命令하여 監司로 하여금 實際 聲績이 없는 者가 名譽를 얻고자 하여 立碑하는 것을 嚴禁할 것과 이와같은 事例가 발생하면 重治할 것을 請하여 王으로부터 允許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個人的 名譽를 얻기 위한 頌德碑 立碑는 繼續된 것 같다. 이와같은 事實은 「增補典錄通考」에 나타난 康熙 丁酉年인 肅宗 43年(1717)의 承傳에서 보다 더 具體化 되고 있다.

「守宰頌德立碑建祠不禁之監司從重推考守令罷職在官而預爲勤石者削去仕版」¹²⁸⁾

와 같이 守令의 德을 稱頌하여 碑石이나 祠堂을 세우는 事例를 禁하지 아니한 監司는 重推考하고 守令은 罷職에 처하며, 官職在職時 미리 碑石을 만들게 한 자는 削去仕版 즉 官吏名簿에서 그 姓名을 지워버린다고 했던 점으로 미루어 守令의 善政碑가 그 당시 濫設하였음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監司의 善政碑는 地方守令의 그것과는多少

差異가 있다고 봐야 하겠으니 즉 地方守令은 近民之官으로서 官·民과 직접 접촉으로 관련을 갖게 되므로 濫設의 可能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監司의 경우는 守令을 監督하는 職位란 점과 아울러 各邑을 巡察하면서 守令의 각종 非行을 捉發 朝廷에 啓聞하는 職責인 것이다. 그런 관계로 監司는 守令을 포함한 官民에 대해 模範을 보여야 했으므로 制度上으로 守令의 경우와는 根本의 차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監司의 頌德碑는 朝鮮末期에 접어 들면서 道內各處에서 많이 發見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頌德碑가 監司의 聲績있는 善政과는 전혀 無關하다고 度外視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在任監司 個個人에 따라 善政과는 無關한 頌德碑가 當該監司의 영향력에 의해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들 在任監司의 經歷이나 前資를 살펴볼 때 대체로 學識과 德望이 높았다는 事實을 詳考할 수 있어 實際 善政에 따른 結實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慶尚監司의 善政碑를 筆者が一部 地方에서 調査한 것과 아울러 文獻을 土臺로 한 慶尚監司의 善政事項을 整理해 볼 때 <表 14>와 같다.

(4月號의 繼續)

128) 註13同書, 吏典, p. 215.